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37
----------	-------

발의연월일 : 2024. 4. 18.

발 의 자 : 강민정 · 윤영덕 · 민병덕
서동용 · 이탄희 · 양아원영
김영호 · 도종환 · 장경태
문정복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 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함.

이에 법정 의무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정 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
등교육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나. 법정 의무교육은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2
호 및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법령에서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법정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법정의무교육의 특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5.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6.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3.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6조
14. 「학교급식법」 제13조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17.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및 제8조
18.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제10조
19. 「진로교육법」 제12조
2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